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2타경929 부동산임의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30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광택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16.04.28.[근저당권]			배당요구종기	2022. 5. 11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(주)대 풍건기	목록[4]	현황조사	유치권 주장 점유자							
	목록[5]	현황조사	유치권 주장 점유자							
<비고>										
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<p>-일괄매각. -목록[2,3] 지적도상 맹지임. -목록[4] 현황 '도로'이며 포장공사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함. -목록[5] 지적도상 맹지임. 토지 일부에 토목공사가 되어 일부 조성된 상태의 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함. -목록[4,5] 윤타영(대풍건기)으로부터 2022.03.21.자로 공사대금채권 등 67,070,753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고,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2022가단36543 원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, 피고 윤타영으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'피고의 유치권은 44,695,753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'하는 확정판결이 2024.01.11.자 제출됨.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2타경929

[물건 1]

1.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24-19
임야 448m²

소유자 이종남
박정미

2.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24-61
임야 991m²

3.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24-62
임야 868m²

4.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24-92
임야 649m²

소유자 이종남
박정미

5.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24-93
임야 2384m²

소유자 이종남
박정미

감정평가액 488,175,000
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09	159,966,000	15,996,600
2회	2026.04.13	111,976,000	11,197,600
3회	2026.06.01	78,383,000	7,838,300
4회	2026.07.13	54,868,000	5,486,800

-일괄매각.

-목록[2,3] 지적도상 맹지임.

-목록[4] 현황 '도로'이며 포장공사가 되어 있는
점을 감안하여 평가함.

-목록[5] 지적도상 맹지임. 토지 일부에 토목공사가
되어 일부 조성된 상태의 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함.

-목록[4,5] 윤타영(대풍건기)으로부터 2022.03.21.자
로 공사대금채권 등 67,070,753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
고,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단36543 원고 농업협
동조합자산관리회사, 피고 윤타영으로 한 유치권부존재
확인 소송에서 '피고의 유치권은 44,695,753원을 피담
보채권으로 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
을 확인'하는 확정판결이 2024.01.11.자 제출됨.
